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 Q**
1.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관련 법규나 예규 알려주세요

- A**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발생 불 일치 시 부가세 신고 관련하여

- Q**
- 1기예정신고시에 매출은 발생 했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5월에 되어서 1기 예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만큼 기타매출로 잡아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1기 확정시에 따라서 매출은 없으나 (기 발생되어 2,3월에 예정분에 신고함) 세금 계산서 금액이 없는데 이는 어떻게 신고 해야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타 매출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국세청 신고시에 기타 매출에서 마이너스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네요.

- A**
- 기타매출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는 매출 등을 기재하는 것으로 5월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면 1기확정시에 정상적으로 반영하시고 예정신고분에서 기타매출분을 제외하는 수정신고하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제품 판매 후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Q 당사는 A회사에게 a제품을 판매하고 A회사는 a제품을 B회사로 판매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로부터 a제품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제품에 대해 클레임 대응을 하고 발생한 불량제품 운송비 및 제비용을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클레임 대응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2.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면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여부?

A 매출취소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나, 클레임대응에 따른 비용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고 일종의 배상성격의 비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A업체는 귀사에게 공문 등으로 클레임 대응비용에 대해 청구하면 귀사는 공문 등을 근거로 배상이나 보상성격으로 해당 금액을 보내주는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프로모션 상품 교환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Q 한시적으로 교환권을 만들어 판매 하고자 합니다. 단순 교환권 개념으로 1년 내에 교환 가능 연장 안 되고, 일반 상품권과 같이 금액이 남으면 환불 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상품권이 판매되면 매출이 아니라 사용되는 시점에 매출 발생 하면서 상품권 사용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데, 이번 교환권은 판매시점에 매출로 잡고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교환권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매출은 비용 처리 하려고 합니다만 문제 소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환권사용시점에는 현금영수증등 발행불가)

A 교환권 자체가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품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므로 상품권의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